

## ■ 최근 주요 수행사건 소개 ■

### 경찰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김태형 변호사

#### 1. 들어가며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경찰공무원들이 「경찰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중 '경위, 경사' 부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2 호봉확정을 위한 공무원 상당계급기준표 중 '경찰'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송을 대리했습니다.

#### 2. 현행 경찰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점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르면, 공안직 공무원은 전체 계급에 걸쳐 일반직 공무원보다 약 6%의 우대를 받는데 경찰공무원은 순경(9급)을 제외하고는 공안직 공무원보다 우대율이 낮습니다. 순경 1호봉 우대율(8.4%)은 경장 진급과 함께 절반 이하(4.0%)로 하락하고, 경사와 경위로 승진하면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낮은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직과 공안직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면 모두 14%씩 기본급이 인상되지만 경찰은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해도 8.8%만 인상될 뿐입니다. 일반직, 공안직 공무원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각각 12.6%, 13.7% 임금이 상승하지만, 경찰 공무원은 7.7% 인상에 만족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경찰공무원 직급체계를 10단계로 구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잘못된 경찰관 직급체계는 경찰공무원이 수령하는 봉급과 연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진적체현상과 같은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3. 침해되는 기본권

침해되는 기본권은 평등원칙,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입니다. 경찰공무원들이 공안직 공무원에 비해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에서 현저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오히려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근무시간, 업무의 난이도,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상의 위험, 잦은 야근과 출동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고충 등을 생각할 때, 대부분 내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법원 경위직보다 경찰관들이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는 현실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지위와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급여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훼손하고 있으며,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공무원제도가 훼손됨으로써 공무담임권은 물론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청년들의 행복추구권도 침해되고 있습니다.

### 4. 이번 헌법소원의 의미

이번 사건은 공무원인 현직 경찰관이 전체 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성산파출소장 오승욱 경감이 처음으로 헌법소송을 제안했고, 경찰 내부전산망을 통한 '1인당 1만 원 모금운동'이 진행되어 경찰내부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은 것으로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월급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논조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번 헌법소원은 ① 경찰공무원도 자신의 기본권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적극적인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헌법소원이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히 급여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이 겪고 있는 여러 고충들, 즉 일상적인 야근과 밤샘근무, 사망·부상의 위험에 노출된 근무환경, 승진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경찰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전체의 논의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승욱 경감이 2012년 4월호 신동아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입 순경을 교육하는 중앙경찰 학교 본관 건물 옥상에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문구가 새겨진 뜻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다수 일선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믿음에 보답하고자 어려운 근무환경에서도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경찰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이 공론화되고, 상처 난 경찰공무원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제도정비가 진행될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언론보도

- “경찰도 국민! 특혜라니? 차별과 홀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 신동아(2012. 4.)
- 경찰 간부 헌법소원...경찰 급여체계 어떻게 – 한국경제(2012. 3. 17.)
- “다른 공무원보다 급여 낮다...올려달라” 경찰간부 헌법소원 – 동아일보(2012. 3. 14.)
- 현직 경찰간부 급여체제 개선 위해 헌법소원 청구 – 머니투데이(2012. 3. 14.)

## 6. 다운로드

- 「경찰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중 '경위, 경사'부분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상당계급기준표 중 '경찰' 부분